

## 4단계 BK21 장수·해양바이오 혁신인력 양성 교육연구단 운영지침

제정 2021. 04. 12 규칙 BK21 제1호

개정 2022. 12. 27 규칙 BK21 제 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4단계 BK21 사업 과학기술분야(생물-지역) 「장수·해양바이오 혁신인력 양성 교육연구단」의 일반 행정 및 사업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연구단 목표)** 교육연구단은 창조경제를 실현할 석박사급 창의인재양성을 위하여 부산대학교의 연구 환경을 기반으로 향후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아 장수·해양바이오 사업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고 21세기의 생명과학을 선도할 창의인재를 양성하며 장수·해양바이오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수·해양바이오 사업 분야 인력양성 사업
2. 신진연구인력의 연구개발 진흥 사업
3. 지역대학원 육성사업 장기 발전계획 및 세부 계획 수립
4. 국제 협력 사업
5. 인력양성을 통한 산학 지원 강화 및 기타 교육연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명칭)** 이 교육연구단은 부산대학교 4단계 BK21 사업 과학기술분야 「장수·해양바이오 혁신인력 양성 교육연구단」(이하 “장수·해양바이오 혁신인력 양성 교육연구단” 또는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사업기간)** ① 교육연구단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 부터 차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교육연구단의 조직)** ① 교육연구단에는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자문위원회, 연구사업팀, 그리고 교육사업팀을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분과, 연구분과, 산학협력분과, 국제협력 및 홍보분과로 구성한다.

- ③ 연구사업팀은 해양생태계 및 생물자원 연구사업팀, 해양생물질환 연구사업팀, 환경 및 스트레스 연구사업팀, 해양기능성물질개발 연구사업팀, 노화 및 노화관련 질환 연구 사업팀, 감염성병원체 연구사업팀을 둔다.
- ④ 교육사업팀에는 분자유전학 및 세포생물학 교육사업팀, 분자생리생화학 및 생물정보학 교육사업팀, 해양생물학 및 생태학 교육사업팀, 미생물학 및 면역학 교육사업팀을 둔다.
- ⑤ 교육연구단의 업무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육연구단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직 행정직원을 둔다.

**제6조(임원)** ① 교육연구단에 단장, 운영위원, 평가위원, 자문위원, 연구사업팀장과 교육사업팀장을 둔다.

- ② 교육연구단장은 본교 자연과학대학 생명시스템학과(대학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교육연구단장은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④ 교육연구단장의 교체는 이직 등 특별한 사유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체 참여교수 회의에서 재적 참여교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교체할 수 있다.
- ⑤ 교육연구단장은 4단계 BK21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SRC, ERC, NCRC, ITRC 등 연간사업비 20억원 이상의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단, 6개월 이내에 사임할 때는 예외로 한다.
- ⑥ 사업팀장은 교육연구단 소속의 교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⑦ 운영위원, 평가위원, 자문위원의 임명과 임기는 운영지침 제3장 제30조에 따른다.

**제7조(참여교수의 선발 및 변경 등)** 참여교수의 선발 및 변경 등의 사항은 세칙에 정해진 기준을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참여/지원대학원생의 선발 및 변경 등)**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하고,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및 변경은 세칙에서 정해진 기준을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적용범위)** 교육연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경우 상위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장 예산 사용 지침

### 제1절 예산집행과 결산

**제10조(예산편성)** ① 교육연구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참여교수에게 통보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수업적 요약서, 참여 학생 실적요약서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고 예산을 조정하여 교육연구단 예산을 편성한다.

③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확정한다.

④ 예산편성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한다.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대학원생에게 지원되는 연구장학금 및 성과급
2. 신진연구인력 지원비 : 박사후연구원과 계약교수의 인건비 및 성과급
3. 국제화경비 : 국제학술회의 및 세미나 참가 연구결과 발표, 국제협력 지원, 장단기 해외연수,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비
4. 교육연구단 운영비 : 교육연구단장 및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행정직원 인건비, 세미나개최, 강좌 및 워크샵 지원, 국내학회참가지원,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
5. 간접비 : 사업비 총액의 5% 범위 이내에서 교육연구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책임)** ①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 전체의 예산편성, 조정, 통제 등 예산전반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진다.

**제12조(내부통제)** ①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 집행 시 교육연구단장은 이의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장은 당해 사업기간이 종료, 결산 후 예산이 사업계획에 의해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당해 사업기간 종료 시 그 당해 예산은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교육부 지침과 교육연구단장의 권한으로 이월집행 할 수 있다. 단, 이월금은 사업비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제13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교육연구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목 간의 조정 및 신설을 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의 전용)** 편성, 확정된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 시 전용을 제외한 과목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할 수 없다.

**제15조(결산)** ① 교육연구단장은 전년도 사업기간 동안 추진한 사업결과를 포함하여 사업 결산 및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차년도 사업비 요구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② 사업결산 및 정산서 작성 서식은 교육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2절 사업비 관리 지침

**제16조(사업비 교부)** 사업비는 각 교육연구단이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 계좌로 교부한다.

**제17조(사업비 계정관리)** 사업비는 반드시 중앙관리를 해야 하며 교육연구단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되, 사업비의 비목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 지출항목)** 사업비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대학원생에게 지원되는 연구장학금 및 성과급
2. 신진연구인력 지원비 : 박사후연구원과 계약교수의 인건비 및 성과급
3. 국제화경비 : 국제학술회의 및 세미나 참가 연구결과 발표, 국제협력 지원, 장단기 해외연수,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비
4. 교육연구단 운영비 : 교육연구단장 및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행정직원 인건비, 세미나개최, 강좌 및 워크숍 지원, 국내학회참가지원,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
5. 간접비 : 산학협력단을 포함한 대학의 교육연구단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제19조(집행항목 비율 준수)** 사업비 운영시 당초 공고문 및 신청서식에 제시된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비율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간접경비)** ① 대학은 각 교육연구단별 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비 편성 및 집행내역을 각 년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비 운영 원칙)** ① 4단계 BK21 사업 사업비는 대학본부 또는 산학협력단이 중앙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연구단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집행, 관리하게 할 수 없다.

② 사업비의 집행은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간이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 등에 대해서는 대학본부에서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대학에 귀속되어야 한다.

④ 사업비는 시설비 및 교사 건축비 등으로 집행할 수 없다.

⑤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 품의서, 지출원인 행위서 등 집행 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가 보관되어야 하며, 집행 일계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제22조(사업비의 이월)** 예산의 효율적 진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 사업비 배부 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에 한하여 이월 가능 범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① 참여대학원생 지원비는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장학금으로 본다. 다만 지급 형태는 학기별, 월별, 분기별 지급 등이 가능하다.

②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액은 석사 월 70만원, 박사 월 130만원, 박사수료생 월 100만원을 최저 기준액으로 하며, 교육연구단 내 자체 규정을 통해 기준액 이상의 지급이 가능하다.

③ 참여대학원생 지원비는 개인별 계좌 입금의 형태로 지원되어야 한다.

④ 외국인 대학원생이 교육연구단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연구과제의 참여,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참여대학원생의 타 연구과제 참여 등)** ①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에서 정한 주 40시간 이상 수업과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장 책임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보조원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참여대학원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 보조원수당 지급은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현황을 파악하여 책임지고 관리한다.

③ 사업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수업과 연구에 참여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단, 내·외부,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해당 강의의 세부 내역 (학교, 시간, 과목 등)을 적은 강의허가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신진연구인력 지원비)** ① 신진연구인력 지원비는 월 3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② 신진연구인력 채용 시 급여, 법정 보험, 퇴직금,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③ 신진연구인력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 ④ 신진연구인력의 채용과 관리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장이 최종 책임을 진다.

- 제26조(신진연구인력의 강의 등)** ① 박사후연구원은 교육연구단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교육연구단 내의 연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 ② 박사후연구원으로서 시간강의를 수행하려면 강의의 세부 내역(학교, 시간, 과목 등)을 적은 강의 허가요청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계약교수는 교육연구단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교육연구단 내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외부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 ④ 계약교수로서 외부 시간강의를 수행하려면 강의의 세부 내역(학교, 시간, 과목 등)을 적은 강의 허가요청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의 감독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타 연구 과제에 참여하여 수당을 받을 시 지도교수가 현황을 파악하여 책임지고 관리한다.

- 제27조(국제화경비)** ① 국제화경비는 참여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포함)의 해외 학회 참가,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쉽, 해외학자 초빙, 해외 장·단기 연수 경비, 국제(학술)대회 개최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국제화경비는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 ③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연구단 자체 규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하여야 한다.
- ④ 30일 초과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의 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 제28조(교육연구단 운영비)** ① 사업비는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의 10%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 ②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인건비, 여비, 학술활동 지원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된다.
- ③ 참여교수에 대한 월정액 보직 수당을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 ④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교육연구단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효율적 사업관리 추진과 연구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비에서 성과급적 경비를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교수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⑥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 제3장 위원회

**제29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장수·해양바이오 혁신인력 양성 교육연구단」의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구성)** 교육연구단의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과 6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4개의 운영분과(교육, 연구, 산학협력, 국제협력 및 홍보)를 둔다.
  - 3.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된다.
  - 4.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평가위원회
  - 1. 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회와 외부인증평가위원회로 구성한다.
  - 2.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내외의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로 이루어진 자체평가위원들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선발한다.
  - 3. 자체평가위원회는 4개의 분과(교육 및 특성화평가, 연구업적 평가, 산학협력/취업 평가, 사업비집행 평가)로 구성하며, 분과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은 교육연구단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5. 외부인증평가위원회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하지 않는 5인 내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 6. 외부인증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연구단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회
  - 1. 자문위원회는 교육연구단 소속 이외의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장 1인과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소속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집행한다.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 운영의 기본계획과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합의체이다.
- ③ 평가위원회는 교육연구단의 운영 및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방향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한다.
- ④ 자문위원회는 교육연구단의 운영방향, 교육연구단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연구기관 간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협력을 위한 자문기구이다.

**제33조(기능)**

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연구단의 연도별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연구단 구성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단의 제규정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한 연구비 배분,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연구단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개선사항 및 사업방향 등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대학원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논문 및 특허와 같은 연구업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 및 취업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여 교육연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1. 교육연구단이 지방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방향을 구도한다.
2.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련 장수해양바이오 산업의 지역 내 정착을 위한 정책

을 입안, 시행한다.

3. 지역산업 및 연구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산업정책과의 조화·상승효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운영방향을 개발·제시한다.

## 제4장 신진연구인력

### 제1절 계약교수

**제34조(운영)** ① 운영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이 자체적으로 초빙기간, 초빙목적, 지원급여액 등 모든 관련사항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자를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교수는 교육연구단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교육연구단 내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하므로 외부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⑤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의 관리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제35조(계약교수 선발 및 배정)** ① 외국인 교수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류하고 교육연구단 내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계약교수 형태로 초빙한다.

② 계약교수선발은 연구경력 또는 이에 준 하는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하고, 구성비율이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신진연구인력 채용시 급여, 법정 보험, 퇴직금,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36조(급여)** 계약교수의 경우 급여는 월 3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37조(의무)** 계약교수는 SCI 등재 정기학술지에 연 1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근무 개시일 부터 1년 내에 주저자로서 논문이 제출(in press 포함)되지 않는 경우, 2년차 추가 지원을 할 수 없으며, 논문 발표의 의무가 완수되지 않는 지도 교수의 경우 대학원생 지원을 운영세칙에 따라 차감한다. 기타 이 지침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대학교 계약교수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2절 박사후연구원

**제38조(운영)** ① 운영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이 자체적으로 초빙기간, 초빙목적, 지원급여액 등 모든 관련사항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③ 박사후연구원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연구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제39조(박사후연구원 선발)** ① 선발은 국내외 홍보를 통하여 수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지원자는 지원서에 반드시 추천교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의 연도별 정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0조(직무)**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은 본 교육연구단의 목표에 부합한 연구과제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다.

**제41조(급여)** 박사후연구원의 급여는 월 3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2조(의무)** 박사후연구원은 SCI 등재 정기학술지에 연 1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근무 개시일 부터 1년 내에 주저자로서 논문이 제출(in press 포함)되지 않는 경우, 2년차 추가 지원을 할 수 없으며, 논문 발표의 의무가 완수되지 않는 지도교수의 경우 대학원생 지원을 운영세칙에 따라 차감한다. 기타 이 지침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5장 교육연구단 직원

**제43조(임용)** 교육연구단직원의 임용은 교육연구단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채용한다.

**제44조(신규채용)** ① 교육연구단 직원의 신규채용시 업무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검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구단 직원의 임용 방법과 결격 사유와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인사관리 지침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교육연구단직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단, 임용기간은 사업기간 내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정원)** 교육연구단 직원의 정원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46(복무)** 교육연구단 직원은 학칙 및 부산대학교 직원복무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연구단장의 명을 받아 성실하게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7조(보수)** 교육연구단 직원의 보수는 교육연구단 보수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8조(징계 및 면직)** ①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부산대학교 기성회직원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본 교육연구단의 4단계 BK21 사업이 중단 또는 종료되는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제49조(퇴직금 지급)** 교육연구단 직원의 퇴직금 지급은 근로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장 국제협력사업

**제50조(목적)** ① 본 사업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의 미래기반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동 사업 추진에 있어 선진 외국대학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51조(사업프로그램)**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1. 해외 장기연수
2. 해외학술회의 참가
3.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
4. 국제학술회의 개최

## 제1절 해외 장기연수

**제52조(목적)** 참여대학원생들이 선진국의 외국 대학에서 장기체류(연수기간: 15일 초과)를 통해 학위논문 프로젝트의 공동연구 또는 실험에 참여하여 국제적 시각의 논문작성 및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53조(연수비 지원)** ① 항공료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실비 지급한다 (예산 범위 이내).

② 30일 초과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대학원생 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54조(연구결과)** ① 연수후 연구결과보고서를 소정양식에 따라 귀국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9개월 이상 장기 해외연수의 경우, 연구결과는 귀국 후 1년 이내에 정기학술지에 게재되도록 해야 한다.

**제55조(선발대상 및 기준)** 교육연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연구 및 특허 실적, 수학 능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학생 지원 원칙에 따라 교육연구단장의 판단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

## 제2절 해외학술회의 참가

**제56조(적용범위)** 참여대학원생이 연구논문 발표를 위해 해외 저명학회가 주관하는 4개국 이상(한국 포함) 참여,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이며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인 논문비율이 50% 이상인 국제학술회의의 참석에 한하여 적용한다(단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 4개국 이상 참여
-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인 논문비율 50% 이상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제57조(참가기간)** 해외학술회의 참석 기간(15일 이내)으로 한다.

**제58조(경비 지원)** 해외학술회의 참가경비는 공무원 여비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예산 범위 이내).

## 제3절 해외석학초빙

**제59조(운영)** ① 해외석학을 초빙할 경우 사안에 따라 처우를 결정한다.

**제60조(지원범위)** 해외석학을 초빙하는 경우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가

능하며, 항공료, 강연료 체재비 등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한다.

## 제7장 보수규정

**제61조(목적)** 이 내규는 부산대학교 「장수·해양바이오 혁신인력 양성 교육연구단」의 관리지침 중 보수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교육연구단교직원의 구분)** 교육연구단 계약교수,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초빙교수 및 교육연구단 직원으로 한다.

**제63조(보수)** 교육연구단 교직원의 보수체제는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① 교육연구단 계약교수와 박사후연구원은 월 300만원 이상으로 하고, 퇴직금 및 인건비에 대한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 ② 교육연구단직원의 인건비 및 퇴직금은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장이 결정하고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계약한다.

**제64조(업무활동비)** 교육연구단 교직원의 업무에 따라 업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① 단장의 업무활동비는 사업계획서상 금액을 지급한다.
- ② 운영위원, 사업팀장의 업무활동비는 교육연구단장이 결정한다.

## 제8장 지적재산권

**제65조(목적)** 본 장은 부산대학교 「장수·해양바이오 혁신인력 양성 교육연구단」의 특허권 및 그 양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6조(규정)** 부산대학교 「장수·해양바이오 혁신인력 양성 교육연구단」 소속 교수의 연구와 관련한 특허출원은 부산대학교 특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장 성과급

**제67조(운영)**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교수, 사업팀, 대학원생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원하거나 대학원생지원, 학술대회 참가 등의 우선권을 줄 수 있다(사업목표달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 및 가중치에서 우대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 연구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인정받은 교수, 사업팀, 대학원생

2. 장수·해양바이오 사업분야의 활동 중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산학협력, 특허 등의 우수한 성과를 낸 교수, 사업팀, 대학원생
3. 교육연구단 운영에 기여도가 우수한 교수

**제68조(평가기준)** 평가기준은 세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10장 기 타

**제69조(홈페이지 운영)** 교육연구단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교육연구단 현황, 사업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실적 및 성과,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을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0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 운영지침 및 부산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시행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2021. 04. 12.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 이전에 교육연구단(팀)에서 이미 집행한 BK21 사업은 이 지침에 의하여 추진한 것으로 본다.

## 4단계 BK21 장수·해양바이오 혁신인력 양성 교육연구단 운영세칙

제정 2021. 04. 12 BK21 규칙 제1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교육연구단 운영지침에 정해지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 기준을 제시해 교육연구단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 이 운영세칙에서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실행예산 편성)** 실행예산의 편성은 4단계 BK21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60%이상, 교육연구단운영비 10%이내, 간접비 5%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인건비관련)** 장기연수 학생의 경우 4단계 BK21 사업 인건비와 중복하여 수혜받을 수 없다.

**제5조(대학원생 지원비 배정)** 대학원생 지원비는 교수별 혹은 팀별로 차등 지급한다. 차등액은 실적평가기준에 의하여 차등지급하며, 그 기준은 아래의 자체평가지침에 따른다.

### 제1장 참여교수의 평가 및 선발 기준

**제6조(목적)**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및 교육연구단의 기여도에 따라 평가항목을 정량화, 객관화하여 그 결과를 교육연구단의 재편성 및 성과급 지원의 근거로 삼는다.

**제7조(평가대상 기간)**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평가대상 기간은 아래와 같다.

- ① 평가는 상기 제6조(목적)에 근거하여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시 실시하며,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참여교수 선발은 1년 단위로 평가하여 결정하며, 4단계 BK21 사업 개시 최초 평가는 2021년 7월에 실시하고, 평가대상 논문은 2018년 7월~2021년 6월 동안의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제8조(평가)** 교육연구단이 추구하는 바가 연구력의 질적인 향상에 있음을 감안할 때 평가항목은 연구영역을 우선시 한다.

- ① 최근 3년간 SCI급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지도학생이 1명 이상인 지원자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 ② 최근 3년간 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자연대 성과평가 안에 따라 정성·정량 평가를 실시한다. (연도별 가중치 없음)
- ③ 그 외 세부사항은 [별첨 1] 4단계 BK21 장수·해양바이오 혁신인력 양성 교육연구단 자체평가안의 기준을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참여교수의 선발기준)** 참여교수의 선발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①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 ②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자격요건은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Cell, Science, Nature를 포함한 IF가 20이상인 논문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교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 ④ 그 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2장 참여교수 인센티브 지원기준

**제10조(목적)** 교육연구단이 추구하는 연구력의 질적인 향상 및 교육연구단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 및 특허 업적이 우수한 경우 또는 교육연구단 운영에 탁월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제11조(대상 업적물)** 인센티브 지급 대상 업적물은 전반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후반기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어진 업적물로 제한한다 (단 인력양성 실적은 매년 6월(전반기) 12월(후반기)의 실적으로 한다).

**제12조(평가항목)** 참여교수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평가항목과 그 세부내용은 [별첨 1] 4단계 BK21 장수·해양바이오 혁신인력 양성 교육연구단 자체평가안의 기준에 따르고 그 외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평가 및 금액)** 평가는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자료를 취합하여 실시하며, 종합평가는 전반기와 후반기 성적의 합으로 한다. 인센티브 금액은 책정된 사업 운영 경비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단 참여교수 1인당 인센티브 합계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교육연구단 기여도 인센티브)** 연구 및 특허 업적물 이외에 교육연구단 운영에 탁월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의 지급 기준을 따른다.

- ① 교육연구단 기여도 인센티브는 매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참여교수 1인당 인센티브 합계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연구 및 특허 실적에 의한 인센티브와는 별개로 지급한다.

### 제3장 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 기준

**제15조(대상)** 지원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사업 참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제16조(선발)** 지원대학원생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발한다.

- ① [별첨 2] 4단계 BK21 장수·해양바이오 혁신인력 양성 교육연구단 자체평가안의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를 평가한 후 평가순위에 따라 지원대학원생을 차등 배정한다. 교수별 지원대학원생 수는 배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배정된 지원대학원생 수를 고려하여 각 참여교수는 연구 및 특허 실적, 수학생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학생 지원 원칙에 따라 지도학생 중에서 지원대학원생을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지원대학원생을 결정한다.
- ③ 지원대학원생은 학기마다 선발한다.

**제17조(지원)** 배정된 예산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학원생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변경)** 지원대학원생은 휴학, 자퇴, 취업 등을 포함하는 변경의 사유가 생길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그 외 세부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

### 제4장 참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인센티브 지원기준

**제20조(목적)** 참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간 경쟁을 촉진하고 우수한 논문의 발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제21조(평가항목)** 참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평가항목과 그 세부내용은 [별첨 4] 4단계 BK21 장수·해양바이오 혁신인력 양성 교육연구단 참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평가안의 기준에 따르고 그 외 세부사항은 운

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평가 및 지원기준)** 교육연구단 참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매년 사업 기간 내의 실적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 ① 평가는 매년 전반기(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후반기(매년 9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에 실적 자료를 취합하여 실시하며, 그 외 제1조(목적)에 근거하여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논문은 기간 내에 게재승인(in press)을 받은 논문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SCI(E) 논문 주저자 출판 1편 이상이며, 신청 시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은 사업 참여기간동안 각 해당 사업년도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 참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성과급은 참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또는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항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지원금액)** 인센티브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 ① 지원금액은 상기 제2조(평가항목)의 평가결과에 따라 책정된 사업운영 경비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1인당 년 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따라 대학원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타 국가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본 사업의 연구장학금을 합산하여 상한액 초과 불가).

**제24조(기타 인센티브)** 상기 제22조의 지원기준 이외에 교육연구단 운영에 따라 인센티브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장·단기 해외연수자 선발 및 지원기준

**제25조(목적)** 교육연구단에 소속된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을 대상으로 국제학회 참여 및 해외 기관으로의 장·단기 해외연수자를 선발하여 지원한다.

**제26조(선발기준)** 장·단기 해외연수자의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 (연수기간: 15일 이내)는 연구논문 발표를 위해 해외 저명학회가 주관하는 4개국 이상(한국 포함) 참여,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이며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인 논문비율이 50% 이상인 국제학술회

의에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 참여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② 장기 해외 연수자(연수기간: 15일 초과)는 해외 대학 연구실 및 그에 상응하는 기관의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사업 참여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③ 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연구 및 특허 실적, 수학 능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학생 지원 원칙에 따라 교육연구단장의 판단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

④ 신진연구인력은 위 ①항에 준하는 국제학술회의에 논문발표(구두, 포스터)를 위한 참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장기 해외연수는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⑤ 참여대학원생이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할 경우, 지도교수가 동행할 수 있다.

### 제27조(선발대상 제외)

- ① 휴학한 자
- ②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③ 기타 교육연구단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28조(지원사항) 장·단기 해외연수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한다.

#### ① 단기 해외연수자 지원

국제 학술회의 참가자 및 논문발표자는 지도교수의 국제화경비 사용한도 내에서 지도 교수 및 참가 대학원생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단기 해외연수 기간은 15일 이내로 정하고 항공료는 실 경비 지급, 1인 체재비는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국제학회 회장 및 구두 발표자의 경우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장기 해외연수자 지원

장기 해외 연수자에게 교육연구단에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 항공요금만 실비 지원한다.

### 제29조(지급경비 회수 및 제재)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될 경우 교육연구단에서 지원하는 연수경비를 지급 중단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향후 교육연구단에서 시행하는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다.

- ① 연수자로 선발된 후 연수자 본인의 사유로 인하여 연수가 불가능할 경우
- ② 정해진 연수기간 중 일시 귀국 기간이 14일을 초과할 경우 (장기연수일 경우 30일을 초과할 경우)
- ③ 귀국 후 연수의무 사항을 불이행 할 경우
- ④ 기타 교육연구단에서 연수비 및 체재비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0조(의무) 장·단기 해외연수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 ① 단기해외연수에 참가한 자 또한 귀국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교육연구

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기 해외 연수에 참가한 대학원생은 도착 후 체재지 도착보고서를 10일 이내에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9개월 이상 장기 해외연수의 경우, 연구결과는 귀국 후 1년 이내에 정기학술지에 게재되도록 해야 한다.

**제31조(기타사항)** 부산대학교 장단기연수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장 기타 인센티브 지원

**제32조(목적)** 교육연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제33조(직원 인센티브)** 교육연구단 직원의 교육연구단 운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평가항목과 세부내용은 [별첨 5] 4단계 BK21 장수·해양·바이오 혁신인력 양성 교육연구단 직원 근무실적 평가안의 기준에 따르고 그 외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지원금액은 상기의 평가결과에 따라 책정된 사업운영 경비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1인당 년 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장 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운영 기준

**제34조(채용기간)** ① 박사후연구원의 1회 계약 기간은 최대 1년으로 1년 계약 후, 실적에 따라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이 종료된 박사후연구원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으로 다시 계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박사후연구원의 전체 계약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제35조(선발)** ① 박사후연구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 선발하며, 선발기준은 [별첨 3] 4단계 BK21 장수·해양·바이오 혁신인력 양성 교육연구단 신진연구인력 평가안의 기준에 따르고 그 외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박사후연구원을 채용한 참여교수는 채용한 박사후연구원의 계약 종료일 이후 1년 이내에는 교육연구단 지원 박사후연구원을 배정받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박사후연구원의 배정시 정성적 고려사항(예, 배정 우선권 등)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6조(의무)** ① 박사후연구원은 SCI(E) 등재 정기학술지에 연 1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계약기간 내에 주저자로서 논문이 제출(in press까지)되지 않는 경

우, 2년차 추가 지원을 할 수 없으며, 논문 발표의 의무가 완수되지 않는 지도교수의 경우 대학원생 분배 시 1년간 석사기준 1명 분의 지원을 차감한다. (박사과정생만 있는 경우, 6개월간 박사과정생 1명 분의 지원 차감)

② 박사후연구원의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SCI(E) 논문 출판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하며,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SCI(E) 논문 출판의 의무를 가진다.

## 제8장 대학원생 학위논문 유사도 심의

**제37조(구성)** 석사 3인, 박사 5인의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전논문 발표 및 학위논문 유사도에 대해 심의한다.

**제38조(의무)**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심사 시 논문 표절 예방을 위하여, 대학원생은 「Turn-it-in」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이를 확인(또는 심의) 받아야 한다.

## 제9장 학위청구 자격시험(종합 시험) 운영

**제39조(운영)** 학위청구 자격시험(종합 시험)은 대학원 생명시스템학과에서 통합 관리한다.

### 부 칙 (2021. 04. 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장수·해양바이오 혁신인력 양성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선발 자체 평가 기준

■ 참여교수 선발

- 1차년도 참여교수 23명
- 참여교수 선발은 1년 단위로 평가하여 결정
- 최근 3년간 SCI급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지도학생이 1명 이상인 지원자를 평가 대상으로 함  
\* 기간 내에 오프라인 게재(published)한 논문만 인정
- 참여교수 선발 기준 : 최근 3년간 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자연대 성과평가 안에 따라 정성·정량 평가 실시 (연도별 가중치 없음)
- 최초임용 신입교수 6개월 평가 유예 (임용 6개월 후부터 교육연구단 참여 가능)
- 최초 평가는 2021년 7월에 실시하며, 평가대상 논문은 2018년 7월~2021년 6월 동안의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실시 (2021년 9월부터 신규 선발된 참여교수로 사업 운영)

▶ 저자가중치									
가) 주저자 : 1/(총주저자수)									
① 주저자는 제1저자, 교신저자를 의미함									
② 총주저자수에 지도 학생 및 박사후연구원(연구교수 포함)은 제외함 (단, 논문에 부산대 소속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나) 공동저자 : 1/(총저자수+1)									
▶ 질적가중치 : [(1 - 'JCR IF(impact factor) 순위 백분율') × 4 + 2] × A									
가) 우수논문가중치 A: IF가 10미만인 경우 A=1, IF가 10 이상인 경우 A=IF/10로 함									
나) 복수의 JCR 카테고리에 포함된 저널은 유리한 것으로 함									
[예시]									
발행일	학술지명	저자 역할	총(주)저자 수	논문제목 (첫 2단어)	저자 가중치	JCR IF 순위 백분율	A (우수논문가중치)	질적가중치	점수 (10×저자가중치×질적가중치)
2017.03	Oncogene	교신저자	- 총 주저자 수: 2 - 지도학생: 2 - 박사후연구원: 1	TFAP2C promotes	0.5	0.08771 9298	1	5.64912 28	28.24561

■ 부칙

- 박사후 과정, 국제경비지원 등 타 수혜내용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참여교수에게 동일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정
- 연구재단의 BK21 FOUR 운영 규정,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집행규정을 상위규정으로 함
- 운영 및 사업비에 관한 세부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따름

【별첨 2】

장수·해양바이오 혁신인력 양성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지원 자체 평가 기준

■ 참여대학원생 지원

- 대학원생 지원은 1학기 단위 평가 후 참여교수별 대학원생 지원금 결정
- 평가 실적에 따라, 대학원생 지원금 차등 지원
  - ✓ A(20%), B(60%), C(20%) 등급으로 평가
  - ✓ A 등급 : 평균 + 1명 / B 등급 : 평균 / C 등급 : 평균 - 1명
- 참여교수별 매학기 +/- 된 금액은 1학기 동안 이월 가능
- 평가 기준
  - ✓ 최근 1년간 논문(자연대 성과 평가안), 최대3편까지 : 60%
  - ✓ 특허등록 및 기술이전-최근 6개월 : 10%  
(국제 10점, 국내 5점, 기술이전: 1점/100만원 당)
  - ✓ 대학원생 국제 학술발표(구두발표, 포스터 수상)-최근 6개월 : 5%  
(국제학회: 10개국 이상 참여, 구두발표 10점, 포스터 수상 10점)
  - ✓ 교수/대학원생 참여도 및 기여도-최근 6개월 : 25%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학원 운영 BK 프로그램 참여 : 건당 3점</li><li>• 교육연구단 자체 프로그램 참여 : 건당 3점</li><li>• 과학대중화, 지역연계 프로그램 : 2점 (최고 10점)</li><li>• 홈페이지 개편 및 교육연구단 보고서 작성 : 3점</li><li>• 학부연계 프로그램 운영 : 3점</li><li>• 해외 복수학위제 운영: 10점(책임), 3점(참여)</li><li>• 국제 학술 교류 프로그램 : 3점 (장기파견 등 / 학술대회 단순 참여 제외)</li><li>• 국내 학술 교류 프로그램 (MOU 등의 결과물로 증빙) : 2점</li><li>• 외국인 학생·박사후 연구원 유치 : 2점</li><li>• 겸임교수 유치 및 협동융합전공 교과목 개설 주관 : 5점</li><li>• 수업모델 다변화 : 2점</li><li>• 융합창신연구실 운영 : 3점</li><li>• 창업 : 5점 / 창업유지 : 2점</li><li>• 단장, 운영위원 : 3점</li></ul> <p>※ 모든 기여도 산정은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평가<br/>※ 기타 중간평가에 가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여에 관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점수 부여<br/>※ 일부 교육연구단 사업에 관해서는 학과별 업무 분담 후 주관 참여교수에게 점수 부여</p> |
|--|

- 최초 평가는 2021년 1월에 실시하며, 평가는 2020년 1월~2020년 12월 동안의 게재된 논문과 2020년 7월~2020년 12월 동안의 등록이 확정된 특허, 완료를 통해 증빙이 가능한 기술이전/대학원생 학술 발표/교수·대학원생 참여 기여도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매년 3월, 9월부터 대학원생 차등 지원

【별첨 3】

**장수·해양바이오 혁신인력 양성  
교육연구단 신진연구인력 선발 자체 평가 기준**

■ 신진연구인력 선발 기준

- 최근 3년간, SCI(E)급 3편의 대표논문을 대상으로 자연대 성과평가 안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실시 (연도별 가중치 없음)
- \* 기간 내에 오프라인 게재(published)한 논문만 인정

▶ 저자가중치									
가) 주저자 : 1/(총주저자수)									
① 주저자는 제1저자, 교신저자를 의미함									
② 총주저자수에 지도교수 및 공동교신저자는 제외함 (증빙 필요)									
나) 공동저자 : 1/(총저자수+1)									
▶ 질적가중치 : [(1 - 'JCR IF(impact factor) 순위 백분율') × 4 + 2] × A									
가) 우수논문가중치 A: IF가 10미만인 경우 A=1, IF가 10 이상인 경우 A=IF/10로 함									
나) 복수의 JCR 카테고리에 포함된 저널은 유리한 것으로 함									
다) 가장 최근연도에 발표된 JCR 백분율 적용									
[예시]									
발행일	학술지명	저자 역할	총(주)저자 수	논문제목 (첫 2단어)	저자 가중치	JCR IF 순위 백분율	A (우수논문 가중치)	질적가중치	점수 (10×저자가중치×질적가중치)
2017.03	Oncogene	교신저자	- 총 주저자 수 : 2 - 지도교수 : 1	TFAP2C promotes	0.5	0.087719 298	1	5.64912 28	28.24561

※ 신진연구인력 수혜기준: 4단계 기간 동안 신진연구인력 채용 기회는 참여교수당 균등하게 1회씩으로 한다.

【별첨 4】

**장수 · 해양바이오 혁신인력 양성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인센티브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실적 기간
논문실적 (60%, 60점 만점)	SCI(E) 주저자 논문 (in press까지 인정)	SCI(E) 분야별 상위 10% 40점	최근 6개월
		SCI(E) 분야별 상위 20% 30점	
		SCI(E) 분야별 상위 40% 20점	
		그 외 10점	
학술발표 (10%, 10점 만점)	국 외	구두 5점	최근 6개월
		포스터 3점	
	국 내	구두 3점	
		포스터 2점	
특허 (10%, 10점 만점)	국 제	특허등록 4점, 특허출원 2점	최근 6개월
	국 내	특허등록 2점, 특허출원 1점	
4단계 BK21 사업 참여율 점수 (20%, 20점 만점)	건 당 2-5점 (행사 중요도에 따라 참여점수 변경 가능)	3개월 이상 사업 5점 2개월 이상 사업 4점 1개월 이상 사업 3점 그 외 2점	최근 6개월
총점 (100점)	<b>평가기준</b>		<b>평가등급</b>
	상위 0~20%		A
	20%~50%		B
	그 외		C

【별첨 5】

장수·해양바이오 혁신인력 양성  
교육연구단 직원 근무실적 평가 기준

1. 대상자

□ 평가대상기간 : 20 . . . ~ 20 . . .

성명	소속	최초 임용일	근속연월* (전체)
			년 월

\* 실제 근무기간

2. 담당업무

업무영역	담당업무명	직무 수행 내용 (주요실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자설명회</li> <li>○ 0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자설명회 참석</li> <li>- 0000.00.00</li> <li>○ 0000</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미나 개최</li> <li>○ 지출결의서 작성</li> <li>○ 자격검증</li> <li>○ 참여교수 변경</li> <li>○ 하반기 실적조사</li> <li>○ 자체평가보고서작성</li> <li>○ 0000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미나 개최</li> <li>- 0000.00.00</li> <li>○ 카드지출</li> <li>○ 일반지출</li> <li>○ 참여인력 검증</li> <li>- 0000.00.00</li> </ul>
기타	○	

\* 업무영역은 담당업무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3. 근무실적 평가표

평가영역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매우미흡 ①	미흡 ②	미흡 ③	미흡 ④	보통 ⑤	보통 ⑥	우수 ⑦	우수 ⑧	매우우수 ⑨	매우우수 ⑩
1. 근무실적 (50점)		업무목표에 적합한 성과달성 정도	1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담당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1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업무수행의 시간 내 처리 능력	1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담당업무에 대한 창의적 기여도	1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교육연구단 기여도	1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50점)		담당업무의 숙지도 및 전문성	1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업무의 기획력 및 추진력	1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상황에 따른 문제점 발굴 및 적절한 문제해결 능력	1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책임감 및 성실성	1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적극성 및 팀워크	1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총점			100점	합계					점				

### 4. 종합평가

평가자	장수해양바이오 혁신인력 양성 교육연구단장	평가일자	20 . . . .
	성명 : (인)	종합평가등급	

\* 평가등급: (A)탁월 (100-90점), (B)우수 (89-80점), (C)보통 (79-70점), (D)미흡 (69-60점), (E)불량 (59점이하)